

인도네시아국	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----	----------------

(2013년 10월 18일)
(자카르타 aT)

구분	핵심 내용
라벨	☐ 인도네시아, 축산물 할랄 인증 획득이 의무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	☐ 주요 내용 ○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비정부기관인 MUI의 부속기관인 LPPOM-MUI에서 발급 ○ 수입 농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정 범위 - 인도네시아 인증기관(LPPOM-MUI)에서 인정하는 각국의 인증기관(41개)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어야 됨. *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인증마크는 불인정 - 그 할랄 인증을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정 ○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에 할랄 라벨부착은 권고사항으로 할랄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나 - 무슬림 인구가 80%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라벨을 부착 없이 수출확대에 애로 ○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-4에 의거 할랄 인증이 의무. - 인도네시아로의 한국 축산품 수출이 전무한 상황 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시사점 :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MUI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필요 -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인증기관으로 공인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는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한국에서 할랄 인증 취득 가능 ○ 대처방향 - 한국이슬람교 중앙회를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 공인받기 위해 관련 정보

	조사 및 전파 - 세계할랄위원회,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등 협의 - 세계할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 한국 초청 세미나 개최예정 -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공인 인증기관 지정 추진 ☐ 발표 일자/ 출처 : 인도네시아 축산법 2009년 18호 58-4 ※ “Produk hewan yang diproduksi di dan/atau dimasukkan ke wilayah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untuk diedarkan wajib disertai sertifikat veteriner dan sertifikat halal.” “축산·부산물은 할랄인증과 가축인증 획득이 의무”화
--	---